

## AICPA의 회계원칙 연구\*

이 정 호\*\*

《目 次》

I. 서 언	V. 회계원칙심의회의 활동과 성과
II. 초창기의 회계원칙 제정노력	VI. 「APB 제4보고서」
III. AIA의 「회계5원칙」	VII. 결 언
IV. 회계절차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 I. 서 언

미국에서 회계원칙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견해를 표명해 왔던 기관으로서 미국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AICPA)를 들 수 있다.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라고 하는 전문직업인들의 모임인 본 회는 처음에는 미국공공회계사회(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 : AAPA)란 이름으로 (1)직업인으로서의 공공회계사의 규합, (2)회원들의 권리옹호, (3)회원자격기준의 설정, (4)회계기술의 증진, (5)회계교육의 개선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1886년에 설립되었다. AAPA는 1916년에 다시 편성되어 1917년에는 미국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 AIA)로 개칭되었다가 1957년에는 오늘날의 명칭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늘날 자격있는 공인회계사들의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회계실무 및 이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은 미국공인회계사회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일찍이 AIA는 연방준비국(Federal Reserve Board)과의 협동으로 1917년에 「통일회계」(Uniform Accounting)를 공간하였다. 이것은 1918년에 사실상 개정됨이 없이 「공인된 대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차대조표의 작성법」(*Approved Methods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이라는 표제로서 다시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1910년대부터 기업의 경제활동내용을 어떤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 보고하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논의하는 회계원칙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었다. 즉, 1929년 후반기부터 계속된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증권시장은 혼란이 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 투자대중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세론(世論)이 일기 시작하여 '투자자를 위한 회계'(accounting for investors)가 강력히 요청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요청은 실무계, 법조계, 학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공황의 높에 깊이 빠져들고 있던 1930년대 초부터 미국회계사협회(AIA)는 증권거래소와의 협력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the Stock Exchange)를 구성하여 뉴욕증권거래소와 감사증명서의 양식, 주식상장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칙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 서신에 포함된 일부내용은 후에 「주식회사회계의 감사」(*Audits of Corporate Accounts*, 1934)에 수록된 바 있다. 이 곳에서 오늘날 미국회계원칙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서 '일반적으로'(generally)란 용어가 배제된 "인정된 회계원칙"(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시의 회계원칙은 기업이 회계현상을 기록 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의 회계원칙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5가지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AIA의 「회계5원칙」(five broad 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 한다.

그 후 AIA는 1933년에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CAP)를 창설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38년에 가서야 이를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수를 7명에서 21명으로 확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CAP는 1939년부터 1959년까지 20년 동안 51가지의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를 발표하였다. 이를 공보(公報)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시에 일반화 되어있던 회계실무상의 불일치(不一致)와 자의성(恣意性)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다.

그 후 AIA는 1957년에 AICPA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9년에는 공인회계사만으로 구성하여 회계원칙의 제정업무를 수행해 왔던 CAP를 해체하고 공인회계사, 연구자, 재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에 그 업무를 인계하였다. APB를 새로이 설치한 목적은 '회계실무상의 차이나 불일치의 폭을 좁히기 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APB가 추구한 본래의 목적은 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APB는 1959년부터 1973년까지의 14년 동안에 GAAP에 해당하는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APB Opinion) 31가지와 『회계원칙심의회 제4보고서』(Accounting Principles Board Statement No. 4)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AICPA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광범위한 기본적인 회계원칙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많은 논쟁과 각계로부터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결국 APB는 해체되고 민간기구에 의하여 회계원칙 제정노력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재무회계기준 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회계원칙의 제정 업무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고찰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고 변화해온 회계원칙의 제정노력을 미국이 경험한 시대적 특수성과 원칙의 전반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30년 이후 AICPA는 특별위원회의 제보고서, 회계절차위원회(CAP)의 『회계 연구공보』(ARB), 회계원칙심의회의 『APB 의견서』 그리고 『APB 제4보고서』 등을 통하여 회계원칙을 표명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전반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II. 초창기의 회계원칙 제정노력

미국의 경우, 1930년 이전의 회계실무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수행되었다.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실무와 절차는 대부분 비밀에 부쳐졌으며 그에 따라 회계절차의 결과는 일관성의 부족으로 기업간에서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내에서도 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던것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누진소득세 제도가 출현하게 되면서 외부감사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점차로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이 보고하는 이익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정부가 점차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17년에는 신용목적을 위해서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어, 연방준비국(Federal Reserve Board)과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국공공회계사회(AAPA)에 표준적인 회계절차에 관한 각서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 각서는 미국회계사협회(AIA)의 이사회 및 연방통상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 후, 연방준비국에 이를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되었다. 연방준

비국은 이를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전국의 은행가나 은행협회에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917년 4월에 「연방준비국공보」 (*Federal Reserve Bulletin*)에 「통일회계」 (*Uniform Accounting*)라는 이름으로 공간(公刊)되었다. 이것은 1918년에 사실상 개정됨이 없이 「공인된 대차대조표의 작성법」 (*Approved Methods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이라는 표제로서 다시 간행되었다. 1929년에는 이것이 다시 「재무제표의 검사」 (*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어 연방준비국에 유통해서 공간되었고, 이는 1936년에는 다시 AIA에서 「독립공공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검사」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라는 이름으로 공간되었다. 1929년의 공보와 1936년의 공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 있는 회계기준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1929년판의 「재무제표의 검사」에는 1920년대의 회계사고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회계보고의 목적을 신용목적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사 및 대차대조표계정과 관련하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표시에 관한 지시가 2 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② 재고자산은 원가기준 또는 저가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③ 감사 및 고정자산의 표시에 관해서는 기종의 변동과 분류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과 관련하여 볼 때 1929년판 공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① 감가상각비는 이자 및 세금과 더불어 이익의 공체항목으로 하였다는 점, ② 당기순이익(net income for the period)과 당기의 이익 및 손실(profit and loss for the period)과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 기간이익 및 손실은 기간순이익에 특별의 대기항목(貸記項目)을 가산하고 또 특별의 차기항목(借記項目)을 공제한 결과이다. ③ 전기순익의 수정은 잉여금에 대한 가감으로 처리한다는 점, ④ 손익 및 이익잉여금결합계산서의 형식이 제시되었다.

1936년의 개정판은 1929년의 개정판과는 달리 신용목적뿐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연차 보고(annual reports to stockholders)를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독립공공회계사가 검사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1929년판이 공간된 이후 1936년판이 나오기까지에 나타난 회계사고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회계보고서의 전반적 목적에 변화가 있었다. 즉, 재무제표는 경영자에 의한 경영과정의 기간적 관찰 및 보고를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되며, 기업에 있어서 투자의 상태 및 당해 기간 중에 수행된 성과를 명백히 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 (2) 원가기준을 강조하는 동시에 계속기업개념이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중요한 회계관습

의 하나는, 계속기업의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영구히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된다. 공장자산, 장기투자 및 무형자산은 보통 현재실현가능가치 또는 재조달 가치와는 관계없이 원가 내지는 다른 역사적 기준에 따라 표시된다.”

(3) 원가기준을 점차로 강하게 지지하게 되나 1936년 판의 집필자들은 회계절차의 계속적 적용의 필요성을 한층 인식하게 되었다.

(4) 투자자에게 보다 완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이익보고에 대한 개선 및 이익력 인식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공보에서는 이익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익개념은 극히 중요하며, 이익계정은 적어도 대차대조표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5)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는 입장이 대차대조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6) 1936년 판에 제시된 손익계산서는 1929년 판에서 권장된 것보다 간단하다. 영업외손익 또는 임시손익은 기타이익(other income) 또는 기타비용(other charges)이란 항목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당기순이익(net income for the period)이란 항목은 삭제되어 최하단의 수치는 잉여금에 대체되는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net profit or loss for period carried to surplus)로 되어 있다.

1936년판 공보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대차대조표감사에 관한 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그 대신 재무제표의 검사(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대차대조표감사란 말은 1910년경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17년까지 널리 일반에게 보급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규모회사가 생성·발전하고 원가계산방법의 급속한 진보와 소득세법 등으로 말미암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 종래의 대차대조표로부터 손익계산서에로 중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 III. AIA의 「회계5원칙」

회계원칙을 제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경제공황의 피해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31년에 AIA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 사이에 이루어진 한 협약에서 비롯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AIA에 소속된 ‘거래소와의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the Stock Exchange)를 설치하고 메이(G.O. May)를 그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는 NYSE의 ‘주식상장위원회(Committee on Stock List)’와 함께 모든 상장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회계원칙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 당시 NYSE의 고민은 상장기업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회계실무를 공시하지도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IA의 특별위원회는 NYSE 위원회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몇 가지 점을 권고하고 그에 대한 일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회계감사인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인은 그 기업이 선택한 원칙의 계속적인 적용여부를 시험해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AIA는 이 서한에서 1920년대 남용되었던 보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남용(濫用)을 배제함으로써 재무보고상의 이익조작을 금지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5원칙」이다. 이 「회계5원칙」은 '인정된 회계원칙(accepted principles of accounting)'이라는 이름으로 AIA에 의해 준비되고 NYSE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것이 GAAP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시도였다. 이것은 나중에 ARB 43의 제1장에 통합하여 수록되었다.

이들 「회계5원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실현주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및 회사내부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 등 5가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실현주의의 원칙

「회계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손익계정에 직접적으로 대기(貸記)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보통 손익계정에 부과할 수 없는 금액을 미실현이익에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도 이것을 손익계정에 대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익은 매출대금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일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실현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에 관해서 그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를 초과할지도 모를 순판매가격으로 재고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영업상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 산업(예를 들면, 정육업)에서는 이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첫 번째 원칙은 미실현이익(unrealized profit)을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든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든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서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현주의의 원칙(realization principle)을 설명한 것이다. 미실현이익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에 계상하는 예로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에 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다든가 또는 선수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산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실현이익을 간접적인 방법

에 의하여 당기의 이익으로 계상하는 예로서는 고정자산의 쳐분손실을 재고상품의 평가이익과 상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다같이 실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익의 실현(realization)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 말하는 이익의 실현이란 판매기준(sales basis)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판매대금의 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으로부터 차감하는 회계관행을 준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고자산의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basis)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재고자산의 기밀평가에 있어서 평가이익의 계상을 부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예외로서 순매가(純賣價, net selling price)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정유업을 들고 그의 타당성을 회계관행에 두고 있다.

## 2. 자본잉여금에 관한 원칙

「회계5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자본잉여금은 그것이 어떻게 창출되었든 간에 이것을 당해 연도 또는 장래 연도의 손익계정에 대해서 본래 부과시켜야 할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 회사개생시에 현존하는 회사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는 조건하에서는 수익에 부과할 것을 요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개생되는 회사가 경감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그리고 개생은 아니지만 개생과 같은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개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충분히 주주에게 명시하고 또 그 절차가 정식으로 주주에 의해서 승인된다면 회사개생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자본잉여금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자본잉여금을 손익계정에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배제하고 본래 손익계정의 수익에 부담시켜야 할 비용을 자본잉여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의 불합리한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신주발행비용은 당시의 회계관행으로는 이연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다가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장래연도의 손익계정에 비용으로서 부과해야 할 항목이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할 때에 신주의 액면초과금(premium in excess of par value, 주식발행초과금)과 신주발행비용과를 상쇄하는 것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잉여금으로써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한 것이 되어 간접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이익에 대체한 결과가 된다.

하지만 자본잉여금의 원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회사갱생(reorganization)이나 준갱생(quasi-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회사갱생을 위한 비용은 당기의 수익에 부담시키지 않고 고정자산평가이익, 감자차익 및 기타의 갱생처리에 의하여 설정한 자본잉여금에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의 회사갱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산재평가, 채무면제와 같은 재정정리에 따라 회사가 갱생한 경우(준갱생)에는 이 때 나타난 제비용을 자본잉여금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3. 이익잉여금에 관한 원칙

「회계5원칙」의 세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종속되기 전에 창출된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연결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며 또한 이와 같이 잉여금으로부터 선언한 어떠한 배당도 지배회사의 손익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세 번째 원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와의 연결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것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배회사가 되었을 경우에 종속회사가 그 직전에 유보하고 있던 이익잉여금으로부터 행한 배당금은 지배회사의 손익계정에 이익으로서 대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였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종속회사의 잉여금을 연결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 4. 자기주식에 관한 원칙

「회계5원칙」의 네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만일 적절하게 공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으로서 표시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회사의 손익계정에 이익항목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원칙은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및 표시에 관한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자기주식(treasury stock), 즉 금고주(金庫株)의 보유가 일정의 법률하에서 인정되고 있어 이것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타나는 배당을 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다.

### 5. 임원·종업원·관계회사 채권 별도표시에 관한 원칙

「회계5원칙」의 다섯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임원, 종업원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받을어음 또는 수취계정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것을 받을어음 계정 또는 수취계정과 같이 일반적인 분류과목에 포함시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 회사내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명료하게 표시하여 기업재무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AIA의 증권거래소협력특별위원회가 권고한 5가지 원칙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판매를 통해서 실현한 이윤만을 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당기 또는 장래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제 항목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서는 안 된다.
- (3)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 된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4)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을 이익에 대기(貸記)하여서는 안 된다.
- (5)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로부터의 채권은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상의 「회계5원칙」에 각출자본 및 자산평가에 관한 여섯 번째 원칙이 1934년에 AIA의 회계원칙연구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 여섯 개의 회계원칙이 1939년 9월에 공간 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ARB) 제1호 및 제43호(1953년 6 월에 공간 됨) 제1장에 수록되었다. 이 회계6원칙(보통 「회계5원칙」이라 칭함)은 당시의 경제상황하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회계를 6개의 원칙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들 원칙은 당시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회계상의 근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이들에 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1932년 9월 AIA와 뉴욕증권거래소와의 협력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회계에 관한 5가지 원칙은 향후 미국의 회계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적 회계원칙 형성운동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회계5원칙」은 미국회계원칙이 성문화된 효시(嚆矢)가 된다.

## IV. 회계절차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AIA는 1933년에 7명의 멤버로 구성된 회계원칙개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를 두어 1939년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이어 1936년에는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CAP)를 설치하고, 1938년에 가서는 21명의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로 확대·발전시켰다. 이 위원회는 회계원칙 및 회계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서를 공간하기로 하고, 1959년 8월까지 20년동안 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B)를 51호까지 발간하였다. 최초의 42통의 「회계연구공보」 중 8통은 회계용어 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Terminology: CAT)의 보고서로서, 이는 1953년에 「회계용어공보 제1호」(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의 「검토와 개요」(Review and Résumé)란 명칭으로 단독 공간되었다. 나머지 34통의 「회계연구공보」 중 31통은 동 43 호로서 통합 편집되었으며, 나머지 3통은 전시 중의 회계문제를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삭제되었다.

이들 「회계연구공보」 제43호와 제44호로부터 제51호에 걸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의 명칭은 <표 1-1>과 같다.

(표 1-1)

ARB No.	발표연월	『회계연구공보』(ARB)의 명칭
No. 43	1953. 6.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 44	1954. 10.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No. 44(수정)	1955. 7.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No. 45	1955. 10.	Long-Term Construction-Type Contracts
No. 46	1956. 2.	Discontinuance of Dating Earned Surplus
No. 47	1956. 9.	Accounting for Costs of Pension Plans
No. 48	1957. 1.	Business Combinations
No. 49	1958. 4.	Earnings per Share
No. 50	1958. 10.	Contingencies
No. 51	1959. 8.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회계연구공보』로 공표되어 회계실무자들로부터 일반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1명의 회 계절차위원회의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회계연구공보』에 나타난 회계원칙은 회계 실무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이 취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개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호르는 기본적 사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졌다.

- (1) 수익은 보통 판매시점에서 실현되며, 이 때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실현주의 원칙)
- (2) 자산은 원가 이상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역사적 원가주의 원칙)
- (3) 비용은 편익을 향유한 기간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익은 당기업적주의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당기업적주의 원칙)
- (4) 완전공개와 계정의 적절한 분류는 재무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완전공개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볼 때 1950년대까지 견지해왔던 회계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익인식에 있어서는 실현주의 원칙(realization principle), 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historical cost principle), 이익의 측정에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cost with revenue principle), 이익의 계산방법에는 당기업적주의 원칙(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concept of income principle), 정보의 공시(公示)에 관해서는 완전공개주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등이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존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계용어위원회(CAT)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표 1-2>와 같은 네 가지 『회계용어공보』(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s: ATB)를 공간하였다. 이들 『회계용어공보』를 제정한 위원회는 주로 회계절차위원회(CAP)의 위원중에서 선출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표명된 회계용어에 관한 정의는 ATB에 나타난 회계사고와 다름이 없는 선에서 정의되었다. 이를테면, 대차대조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가치(value)를 정의하는 데 역사적 원가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을 정의하는 데 수익인식의 일반기준을 적용한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표 1 - 2]

Bulletin No.	발표연월	『회계용어공보』(ATB)의 명칭
No. 1	1953. 8.	Review and Résumé
No. 2	1955. 3.	Proceeds, Revenue, Income, Profit and Earnings
No. 3	1956. 8.	Book Value
No. 4	1957. 7.	Cost, Expense and Loss

이와 같이 AIA에서는 ARB와 ATB를 통해 회계의 현안문제에 관한 AIA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ARB는 회계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점을 수시로 AIA의 이름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내용에 있어서 상호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체계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개별문제를 귀납적으로 해설 또는 규정하여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칙의 내용도 자연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광범한 회계원칙이 지녀야 할 포괄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바라는 대로의 회계원칙의 성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IA가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단점은 예상되는 고객의 반발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되도록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논란이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공보의 발행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일의 회계방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절충안으로 몇 가지의 회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절차를 급증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감사인이나 경영자의 편의에 따라 원칙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V. 회계원칙심의회의 활동과 성과

스토리(Reed K. Storey)는 회계원칙의 발전단계를 회계원칙에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3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에 속하는 기간은 1932년부터 1940년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는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시도되었고 중요한 회계단체에 의한 연구계획이 시작되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이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generally accepted) 원칙의 리스트는 아직 출현되지 않은 시기이다. 제2기는 1946년부터 1953년에 걸친 시기로서, 이 기간은 주로 AIA와 미국회계학회에 의하여 원칙에 관한 제도적 기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57년부터 1960년대 초기의 제3기에 속하는 기간은 AICPA의 실용주의적 접근방법과, 이론적이고 엄격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려는 미국회계학회의 연구를 결합시키려는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 APB)의 노력이 현저하게 나타난 시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회계원칙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AIA가 취한 회계원칙의 성문화 노력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재무회계상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에 관하여 ARB나 ATB등을 통하여 AIA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회계실무의 지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공보는 일반의 회계관행을 귀납적 방법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AIA의 회계원칙은, 당시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의 회계원칙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 점을 중시하여 AIA회장으로 당선된 제닝스(A. R. Jennings)는 1957년 10월에 회계의 기본적 가정과 최

선의 원칙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구성하여 산업과 직업적 회계사들을 지도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닝스의 제안에 따라 1957년 12월에 연구계획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1958년에 “회원을 … 지도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내용을 명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를 다시 편성하고 회계연구부 (Accounting Research Division; ARD)와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 APB)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이들 회계연구부(ARD)와 회계원칙심의회(APB)는 연구계획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탄생된 것으로서, 당시 AICPA의 재편성 목적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재무회계에 관한 광범한 회계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기본적 공준 (basic postulates)의 설정, ② 광범한 회계원칙(broad accounting principles)의 설정, ③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rules) 및 지침(guides)의 설정 ④ 연구활동이 그것이다. APB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을 성문화하고 적절한 회계실무를 추구하며, 또 회계상의 미해결의 논쟁적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표되는 공식적인 보고서는 전술한 회계 연구부의(ARD) 연구결과에 기초를 두어 논리상 모순이 없는 것에 한정하였다. APB의 멤버는 직업적인 회계사·업계·학계 및 정부에서 선발한 18~2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APB의 공식적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회계연구부(ARD)의 연구활동은 회계연구부에 소속된 회계연구 전문 스태프에 국한해서 수행된 것만은 아니고, 그 밖의 연구원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다.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결과가 회계원칙심의회(APB)의 이름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 다각도로 비판과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AICPA의 「회계연구조사」(Accounting Research Study ; ARS)는 AICPA의 공식보고서가 아니고 회계연구부장의 권한에 의해서 발간된 것이다. 회계원칙을 수립하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은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회계연구부는 회계원칙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연역적 방법을 따르려고 하였다.
- (2) 회계연구부는 APB와 협력관계를 갖는다.
- (3) 「회계연구조사」는 APB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4) ARS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세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회계원칙의 체계화와 관련된 연구로서 ARS No. 1 및 ARS No. 3이 있다. 이들은 각각 1961년과 1962년에 「회계의 기본적 공준」(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과 「기업회계원칙시안」(A Tentative Set of Boar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이란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APB의 견해로서가 아니고 회계연구부의 지휘에 의한 무니츠(M. Moonitz)의 ARS No. 1과 스프라우스(R. T. Sprouse)와 무니츠의 ARS No. 3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무니츠와 스프라우스에 의한 회계공준 및 회계원칙에 관한 기본적 연구가 발표되긴 하였지만, APB에서는 이를 '공준' 및 '원칙'이 회계사상에 크게 공헌한 바는 있으되, 이는 당시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실무와는 너무나 격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락하지 않고 현존하는 회계원칙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그레이디(Paul Grady)에게 위임하였다. 1965년에 그레이디의 이름으로 발표된 ARS No. 7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 목록」(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은 이와 같이 하여 발표된 것이다.

ARS No. 7의 연구목적은 회계원칙에 관한 기본적 제 개념에 관한 논의를 한 다음에, 현행의 회계원칙 및 실무를 APB가 나타나기 이전의 ARB를 요약하여 체계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ARS No. 7을 ARS No. 1 및 ARS No. 3과 비교하여 볼 때, ARS No. 1과 ARS No. 3은 논리적 추론에 따라 회계의 기본적 제 개념을 연역적으로 추론하여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도록 작성된 데 반해서, ARS No. 7은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회계원칙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ARS No. 7 역시 APB가 기대하였던 것과 같은 광범한 회계원칙(broad accounting principles)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ARS No. 7이 발표된 1965년에는 APB 의견서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APB)가 회계의 기본적 문제를 다시 연구할 것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간의 연구 끝에 발표된 것이 「APB 제4보고서」(APB Statement No. 4)인 「기업재무제표의 기초개념 및 회계원칙」(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이었다. 그러나 「APB 제4보고서」도 의도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말았다.

APB는 기구가 해체된 1973년 6월말까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 가지 「회계원칙심의회 보고서」(APB Statements)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은 31가지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APB Opinion)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회계원칙심의회 보고서」는 본질

적으로 교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것이 되지 못한 데 반해서,『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는 APB의 공식적 의견으로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APB의 활동은 능률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즉, APB는 개별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별문제에 관한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전반적 체계를 갖는 기본적 회계원칙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비능률적인 활동에 대한 비난 때문에 AICPA는 1971년에 Wheat Committee를 만들어, 회계원칙을 제정함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1972년 5월에 AICPA의 이사회는 동 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AICPA의 이사회에서 9명의 이사를 선정하여 독립된 기관인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 FAF)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FASB)를 설치하여 종래의 APB 업무를 계승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APB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표 1 - 3)

APB Statement No.	발표년월	APB 보고서의 명칭
No. 1	1962. 4.	Statement by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 2	1967. 9.	Disclosure of Supplemental Financial Information by Diversified Companies
No. 3	1969. 6.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No. 4	1970. 10.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표 1 - 4)

APB Opinion No.	발표년도	의견서 명칭
No. 1	1962	New Depreciation Guidelines and Rules
No. 2	1962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 Credit"
No. 3	1963	The Statement of Source and Application of Funds
No. 4	1964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s Credit" (Amending No. 2)
No. 5	1964	Reporting of Leases in Financial Statements of Lessee
No. 6	1965	Status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 7	1966	Accounting for Leases in Financial Statements of Lessors

APB Opinion No.	발표년도	의견서 명칭
No. 8	1966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No. 9	1966	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
No. 10	1966	Omnibus Opinion—1966
No. 11	1967	Accounting for Income Taxes
No. 12	1967	Omnibus Opinion—1967
No. 13	1969	Amending Paragraph 6 of APB Opinion No. 9. Application to Commercial Banks
No. 14	1969	Accounting for Convertible Debt and Debt Issued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No. 15	1969	Earnings Per Share
No. 16	1970	Business Combinations
No. 17	1970	Intangible Assets
No. 18	1971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
No. 19	1971	Reporting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No. 20	1971	Accounting Changes
No. 21	1971	Interest on Receivables and Payables
No. 22	1972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No. 23	1972	Accounting for Income Taxes—Special Areas
No. 24	1972	Accounting for Income Taxes—Equity Method Investments
No. 25	1972	Accounting for Stock Issued to Employees
No. 26	1972	Early Extinguishment of Debt
No. 27	1972	Accounting for Lease Transactions by Manufacturer Lessors
No. 28	1973	Interim financial Reporting
No. 29	1973	Accounting for Nonmonetary Transactions
No. 30	1973	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
No. 31	1973	Disclosure of Lease Commitments by Lessees

## VI. 「APB 제4보고서」

### 1. 「APB 제4보고서」의 의의 및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AICPA는 「회계조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B), 「회계용어공보」(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s; ATB),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APB Opinion) 등을 통하여 회계의 실천적인 현안문제에 대하여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회계조사공보」나 「회계용어공보」 그리고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 등은 회계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수시로 동 회계사회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상호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체계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고서는 개별문제를 귀납적으로 해설 또는 규정하여 공표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원칙의 내용도 자연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광범한 회계원칙이 지녀야 할 회계원칙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AICPA의 회계원칙심의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가 1970년 10월에 발표한 「APB 제4보고서」(APB Statement No. 4)인 「기업의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 및 회계원칙」(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은 종래에 발표한 공보나 의견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갖는 것이었다.

과거 AICPA의 회계원칙탐구 노력이 전반적으로 한조(一組)의 체계를 갖는 이론적 뒷받침을 갖지 못하고 현안의 회계문제의 해결에 급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APB 제4보고서」는 당시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회계원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현행의 회계실무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 재무회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침이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 거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AICPA로서는 회계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으로서 회계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던 일이다. 특히, 누구도 명료한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성역시되어 오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 광범한 회계원칙과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회계실무에 관한 여러 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18명의 위원 중 카트렛(George R. Catlett)를 제외한 다른 17명의 이해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이 「APB 제4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표명된 내용은 주로 협존하는 회계실무에 반영되어있는 회계의 기본개념과 원칙을 목록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PB 제4보고서」는 ARS No. 7이 발표된 후 5년의 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ARS No. 7은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종래에 발표된 회계의 제 원칙을 규합하여 5개의 회계목적군에 따라 분류·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ARS No. 1이나 ARS No. 3에 비하면 ARS No. 7이 갖는 실무계에서의 수용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으나 ARS No. 7 역시 APB가 기대하였던 것과 같은 광범한 회계원칙(broad accounting principles)이 되지 못하자 ARS No. 7이 발표된 1965년에는 APB 의견서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APB)는 회계의 기본적 문제를 연구할 것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 당시 동 위원회에서 APB에 확약한 실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표 재무제표의 목적과 그 한계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 (2) 회계에 관한 기초적 제 개념을 기술한다.
- (3) 회계원칙을 밝힌다.
- (4) 공정한 보고(present fairly) 및 GAAP에 관한 정의를 내린다.
- (5)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회계에 관한 이상의 기본문제를 표명하기 위하여 APB에 제4보고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간의 조사·연구 끝에 발표된 것이『APB 제4보고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적 제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 논리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동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학계 및 실무계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나타나게 되었다.

## 2. 『APB 제4보고서』의 전반적 체계

『APB 제4보고서』는 전체가 9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목적과 회계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제3장으로부터 제8장까지의 6개의 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다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에 관하여 기술한 3, 4, 5의 3개의 장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밝힌 6, 7, 8의 3개의 장으로 크게 양분하여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GAAP는 이보다 앞서 밝힌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에 근거를 두고 이와 통일적인 관련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이상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나타난 GAAP는 현재의 회계실무를 관찰의 방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본 보고서의 제3, 4, 5의 각 장에서 논의한 재무회계의 환경, 목적 및 특징 등 기초개념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방법론상으로 보면 이는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PB 제4보고서』가 기본적으로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지 규범적(pr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고(1-3) 한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이어 다음과 같은 APB의 입장은 처음에 기대하였던 『APB 제4보고서』에 대해 약간의 실망감마저 느끼게끔 하고 있다. 즉, "이곳의 회계원칙은 오늘날 심의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만을 기술한 것이다. APB는 APB 의견서(board opinion)로써 채택된 원칙을 제외하고서는 현재의 GAAP를 평가 또는 시인하지 아니하였다."(1-4)

위에서 밝힌 대로 만일 APB가 『APB 제4보고서』의 기본적 성격을 기술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또 현재의 GAAP를 평가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만을 기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연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APB의 근본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술적인 회계원칙은 미국공인회계사회(APB)가 아닌 다른 회계기관에서 밝혀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PB 제4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보면 이는 반드시 회계에 관한 현상조사의 결과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점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APB는 본 보고서의 여러 곳에 GAAP에 관하여 신념(belief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AAP가 제3, 4, 5장에서 논의된 기초개념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도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재무회계가 갖는 동적 성질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에서는 “장래에 어떤 형태로 GAAP의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을 평가하고 재무회계의 변화를 지도할 기초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9-4)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APB 제4보고서』가 사실을 단순히 기술한 것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미래지향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기초개념에 관한 3개의 장과 GAAP를 설명한 3개의 장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함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곳의 기초개념은 순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데 대해서 GAAP는 순전히 기술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APB 제4보고서』 목적의 하나는 교육목적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발전목적에 있음을 명시한(1-2)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초개념에 관한 부분은 발전목적에 해당하고 GAAP는 교육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APB 제4보고서』의 성격과 문제점

『APB 제4보고서』는 AICPA가 그 동안 취하여 오던 회계원칙에 관한 의견의 표명방법을 전환하여 재무회계 전반에 걸친 회계이론구조를 형성하여 이로부터 GAAP를 규정하려고 노력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회계기관 또는 학자에 의하여 연구발표된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ARS No. 1은 『APB 제4보고서』의 재무회계 및 재무제표의 특징(제5장)을 규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RS No. 3은 과도하게 이론에만 치우쳐 『APB 제4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회피하였고 또 ARS No. 7은 제 원칙만을 나열하였기 때문에 이론적 구조를 갖지 못하여 분석적으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이

론의 방법론상으로는 「APB 제4보고서」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그의 체계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취지를 중심으로 하여 회계의 기초적 제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APB 제4보고서」가 재무적 정보의 사용자 목적에 적합한 목적적합성을 갖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당시의 회계원칙이 그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히 진전된 것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회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경제적 자원, 경제적 채무 및 이의 변동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이로부터 자산, 부채, 소유주지분의 제 기초개념을 도출한 점은 「APB 제4보고서」가 회계학의 발전에 공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구조를 통해서 재무회계의 범위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있음은 본 보고서가 이룩한 공로로써 높이 평가하여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크게 공헌한 점이 있는 반면에 「APB 제4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 및 실무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AICPA의 연구계획특별위원회가 최초에 APB를 설치하고 이것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하나가 회계의 기본적 공준과 회계원칙을 설정하여 특정의 상황하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GAAP에서는 이의 전반적 체계를 수립하려는 데 많은 주의를 경주하였을 뿐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지침이나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본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기초개념에 관한 부분과 실무의 지침이 되는 GAAP에 관한 부분으로 구별하여 각각 독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 상호관계가 명백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로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바로서는 실무계에서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VII 결 언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증권의 가격조작, 허위보고에 의한 증권의 사기적 매매, 과도한 투기, 기업내부자에 의한 정보의 남용(濫用) 등 기업이 투자자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의 하나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건전한 증권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부정한 가격조작이나 거래를 금지하고, 증권발행자로 하여금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의 공개(full and fair disclosure)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의회는

증권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제정하고 이들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를 설치하였다. 1934년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그 때까지 1933년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해 오던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로부터의 모든 업무를 인계받아 증권거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SEC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제출되는 신고서의 양식·기준·절차 및 규칙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보고서, 사반기보고서 등에도 이를 확장하여 적용시켰던 것이다.

SEC의 규제를 받는 기관은 직접적으로는 SEC에 등록한 기업이 되나 대부분의 유력한 기업들이 SEC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SEC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회계사 사무소도 당연히 SEC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거하여야 할 GAAP을 제정하는 기구에 SEC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에 둔다면,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등록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만 할 것으로서 SEC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식 및 표시에 관한 것이다. 회계처리 및 공시에 관한 회계원칙은 SEC가 직접 마련하지 않고 민간단체(private sector)인 AICPA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SEC가 회계원칙을 제정할 권한을 포기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EC 내부에서는 회계원칙을 직접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일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설명한 민간단체에서 마련한 회계원칙에 동조하지 않고 특정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SEC의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한 경우도 있다.

여하튼 SEC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AICPA의 회계절차위원회와 이의 업무를 인계 받은 APB는 GAAP로서 각각 51가지의 ARB와 31가지의 Opinion을 공표한 것이다.

그러나 AICPA의 APB는 그의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각계로부터 그의 비능률적인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회계사무소의 급격한 발전, 새로운 문제의 속출, 복잡하고 혁신적인 회계실무의 발전, 그리고 합병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회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70년에 발표한 「APB 제4보고서」가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AICPA의 APB가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로부터 비난이 거세게 일제되었다. 당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SEC와 APB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래 미국에 있어서의 회계원칙의 제정임무는 연방의회로부터 SEC가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권한을 SEC가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제정을 AICPA에 위임하는 한편 APB의 의견을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었다. 말하자면 SEC와 APB와의 관계에서 볼 때 SEC는 최고경영층으로서 그리고 APB는 하위경영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간은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협력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APB 의견서 제2호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둘러싸고 AICPA와 APB와 SEC간에 갈등이 나타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의견서 제6호에서 제외되었던 「할부판매의 이연세」의 처리에 관해서, APB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SEC는 「회계연속통첩」(Accounting Series Release; ASR) 제102호를 발표하는 등 대립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SEC와 APB간에 대립이 나타나게 되자 APB에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데 대한 반성과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둘째는 APB에 대한 각계로부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그 이상 활동하기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960년대 후반에는 세배분(tax allocation), 콩글로머리트 기업의 출현에 따르는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지분풀링의 문제 등 많은 중요한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APB위원들은 비전업(非專業)인데다가 비자주적 위원회로서, 스태프보조의 결여, 불충분한 조사연구시설 등으로 말미암아 회계원칙의 제정활동을 그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APB보다 훌륭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 강력한 조직이 요청되었다 것이다.

셋째는 APB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의 강제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PB는 AICPA의 내부기관이고 AICPA는 회계사의 사적(私的) 회원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APB에서 마련한 회계원칙을 파감사회사에 대해서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에서 AICPA로부터 조직상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규정된 회계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같은 의미에서 APB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여건 하에서 APB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회계실무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inconsistency)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을 좁히지 못하고, 새로운 영역의 재무보고문제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공격은 1차적으로 직업회계인들로부터 나왔고 그밖에도 SEC와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았다. 만일에 APB가 회계원칙을 수립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SEC가 그 본래의 임무인 회계원칙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APB에 대한 이상과 같은 기본문제에 관한 비판과 아울러 1960년대의 재무회계에서 나타난 보고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회계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연구하고 원칙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재무회계의 기본목적에 대하여 연구할 여러 제안들이 나왔다.

1971년 1월에 AICPA의 이사회는 2일간의 회기에서 21개의 회계사무소(accounting firm)에서 선발된 35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AICPA가 어떻게 회계기준설정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어떻게 그의 역할이 재무제표에 의존하고 있는 여려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의 결론은 두 개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제1의 조사위원회는 APB의 활동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이 위원장이 웨트(Francis M. Wheat)였기 때문에 Wheat Committee라고도 한다. 제2의 조사위원회는 재무제표의 목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트루불러드(Robert M. Trueblood)였던 관계로 이를 Trueblood Committee라고도 한다.

Wheat Committee는 1971년 5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다음해 3월에 그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회계원칙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Report of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를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첫째로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 FAF)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재단은 현존하는 직업단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private sector)으로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FAF에서 임명한 7명의 상근(常勤)·유급(有給)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를 설치하는 한편, 세 번째로서 재무회계기준 자문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 FASAC)를 설치하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이들 절차가 완료되면 APB는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1972년 3월에 공개된 이 조사보고서는 같은 해 5월에 AICPA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동년 6월에는 FAF가 조직되었으며 FASB와 FASAC가 설립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재무분석가연합회(Fianancial Analysis Federation), 재무담당임원협회(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미국회계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는 조사위원회보고의 권고에 따라 원조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단체는 FAF의 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1972년 11월부터 1973년 2월에 걸쳐 FASB와 FASAC의 멤버가 지명되

었다. 1973년 1월에는 코네티컷(Connecticut)주의 스템포드(Stamford)에 FASB의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FASB와 FASAC의 첫 번째 회합이 열렸다. 이와 같이 하여 FASB가 성립되었고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George O. May, *Financial Accounting: A Distillation of Experience*, New York: Macmillan, 1943.
- 2) AICPA, "Report to Council of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 *The Journal of Accountancy*, Dec., 1958.
- 3) M. E. Peloube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in Morton Backer, ed., *The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1955).
- 4) E.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ed., 1982.
- 5) AIA,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 New York, Jan. 1936.
- 6) R. K. Storey, *The Search for Accounting Principles* (Scholars Book Co., 1964).
- 7) A. R. Jennings, "Present-Day Challenges in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ancy*(January, 1958).
- 8) AIA, "Report to Council of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Accountancy* (Dec. 1958).
- 9) AICPA, *APB Statement No. 1*.
- 10) AICPA,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5).
- 11) AICPA,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PB Statement No. 4*, (New York :1970).
- 12) Paul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7*, AICPA, 1965.
- 13)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The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5.
- 14) R. W. Schattke, "An Analysis of Accounting Principles Board Statement No. 4,"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72.
- 15) Yuji Ijiri, "Critique of the APB Fundamentals Statement, *The Journal of Accountancy*, November 1971.
- 16) Oral L. Luper and Paul Rosenfield, The APB Statement o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The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71.
- 17) AICPA, *Establishi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 Report of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New York : 1972).
- 18) Harry I. Wolk, Jere R. Francis and Michael G. Tearney, *Accounting Theory*, 2nd ed., 1989.
- 19) Richard G. Schroeder, Levis D. McCullers and Myrtle Clark, *Accounting Theory:Text and readings*, 3rd ed., 1987.
- 20) Stephen A. Zeff and Thomas F. Keller, *Financial Accounting Theory*, 3rd ed., 1987.
- 21)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제3정판, 경문사, 1996.